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2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강명구・김소희・김기현

서명옥 · 김민전 · 김형동

엄태영 · 고동진 · 조은희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보훈보상대 상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국가보훈
	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
	의 위험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u>수 있다.</u>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	
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	
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	
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	
•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
	<u>방</u>
<u>7</u> . ∼ <u>13</u> . (생 략)	<u>8</u> . ~ <u>14</u> . (현행 제7호부터 제13
	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